

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·고시

영도구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6조(낚시통제구역) 및 시행령 제4조(낚시통제구역의 공고)에 따라 부산항대교 일자방파제 및 하부공간 전체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5월 27일

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

1. 낚시통제구역 명칭·위치 및 면적

낚시통제구역 명칭	위치	지정 규모	지정기간
부산항대교 일자방파제 및 하부공간 전체 구역	부산항대교 일자방파제 및 하부공간 전체 (청학동 330-119 일원)	면적 : 약 42,300 m ²	'22. 5. 27. ~ 지정해제시까지

※ 낚시통제구역도 [붙임1] 참고

2. 지 정 일 : 2022. 5. 27.

3. 주요내용

가. 통제내용 : 낚시금지

나. 통제기간 : '22.5.27. ~ 해제시까지(24시간 연중)

다. 시행시기 : 2022. 5. 27.부터

※ 지정일로부터 4개월간 계도기간('22.05.27. ~ '22.09.26.)

라. 위반시 조치사항 : 「낚시관리및육성법」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80만원

이하 과태료 부과(1차위반 20만원, 2차위반 40만원, 3차위반 80만원)

[붙임1] 낚시통제구역도



【위치도】